기 금 관 리 규 정

제정 2004. 4. 10
개정 2013. 2. 27
개정 2019. 4. 8
타 규정개정 2020. 2. 28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재단법인 경기아트센터(이하 “아트센터”라 한다)의 기금 조성 및 운용,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4.8.>

제2조(적용범위)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는 관계법령과 정관 및 제규정에 규정되어 있거나 기부자의 요구에 의해 기금제공 시 약정에 반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① 기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개인 또는 단체(이하 “기부자”라 한다)가 아트센터에 제공하는 금품일체로서 특정 공연, 전시 등 단위 사업에 제공되는 협찬금을 제외한 일반적인 성격의 금품을 말한다.
2. 기금으로 적립된 세입세출 결산잉여금 <개정 2013.2.27>

② 제1항의 금품이라 함은 현금, 어음, 기타 유가증권 등 현금화 할 수 있는 제반증서 및 물품, 부동산 등을 말한다.

제4조(기금의 종류) 기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아트센터의 후원회 등을 통한 모금액
2.제3조에서 정의한 내용의 금품일체
3.기부채납 부동산 및 물품

제5조(기금조성위원회 등)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위원회의 구성 및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기금의 적립방식 및 관리) ①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 및 환금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적립한다.

1. 금융기관에의 예치

② 이 경우 회계관리부서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며, 예산관리부서는 별도의 관리장부를 비치하여 관리한다.

③ 제3조 제1항 2호의 세입세출 결산잉여금은 20% 범위 내에서 경기도와 협의하여 적립하는 방식으로 한다. <개정 2019.4.8.>

④ 기금의 적립은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.<개정 2019.4.8.>

제7조(적립된 기금의 집행) 기금의 운용은 제5조제2항에서 정한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아트센터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해 다음 각 호에 의거 적립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.

1. 사용하여야 할 금액이 적립금의 과실금 범위 내일 경우는 사장이 집행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.
2. 사용하여야 할 금액이 적립금의 원금까지를 포함하는 경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.
3. 제1호 및 2호의 경우 기부자와의 약정에 명시된 경우는 기부자에게 기금 사용의 결과를 별도 보고한다.
4. 기금모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정의 후원금을 유치한 경우에는 이를 유치 한 자에게 기금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유치한 자에게 성과금을 제공 할 수 있다.
5. 기금은 시설노후화에 따른 노후시설 신축, 대수선 및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개선의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, 집행계획서를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<개정 2019.4.8.>

제8조(위임) 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방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 <2013.2.27>

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